

# 공시송달공고

서울특별시 양여 구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,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8. 5. 24.

서울특별시 중구청



1. 공고내용 :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대상자(사전통지내역)

대상자	주소	재산	점유면적 (㎡)	점유기간 (부과기간)	부과금액(원)
박*아	서울 강남구 도산대로89길 **	서울 중구 신당동 162-35	11.9	2017.01.01.~ 2017.12.31	705,430
고*근	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207, **	서울 중구 신당동 432-2806	79.0	2017.01.01.~ 2017.12.31	3,399,520
손*자	서울 중구 동호로11기길 **	서울 중구 신당동 432-2869 (분할전 432-821)	12.0	2017.01.01.~ 2017.12.31	500,540
이*희	서울 중구 동호로11바길 **	서울 중구 신당동 432-1186	1.0	2017.01.01.~ 2017.12.31	13,120
권*규	서울 중구 동호로11차길 **	서울 중구 신당동 432-1888	72.0	2017.01.01.~ 2017.12.31	3,450,810
임*수	서울 중구 동호로11차길 **	서울 중구 신당동 432-2890	68.0	2017.01.01.~ 2017.12.31	2,593,240

3. 공고기간 : 2018. 5. 24. ~ 2018. 6. 7.
4. 기타사항 :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(02-3396-571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

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, 의견이 있어 『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』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변상금 부과 통지내역				의 견
소 재 지	점유면적 (㎡)	부과기간	변상금(원)	

기타의견(입증서류 등 첨부)

신청인      주        소 :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       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생   년   월   일 :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전   화   번   호 :

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

##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

점유재산의표시		분납형식	비고
소 재 지	점유면적(㎡)		
		년 회 분납	

분할납부 신청내역						
변상금 총 액 (원)	회차	납부일	변상금 (원)	연 부 이 자 (원)	합 계	비고
	1회					
	2회					
	3회					
	4회					
	5회					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※ 변상금의 분할 납부    100만원초과 : 1년 4회 이내 분납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만원초과 : 2년 8회 이내 분납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300만원초과 : 3년 12회 이내 분납    (분납시 이자 적용)

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

신청인 주 소 :  
           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 
           생년월일 :  
           전화번호 :

서울특별시중구청장 귀하